

절도범인이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경우

LAW Common Sense Information



글 _ 박종복 변호사

절도범인이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경우는 강도죄에 준하는 준강도죄로 처벌받는다.

Q 중학생인 아들이 동네 문방구에서 샤프펜을 훔친 뒤 학교에 가서 1교시 수업을 받았다. 1교시 수업후 다시 문방구에 들렀다가 주인에게 발각되어 도망중 뒤쫓아 온 주인을 폭행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경우는 절도죄가 아니라 준강도죄라서 강도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데 사실인가?

A 타인의 재물을 훔치면 절도죄로 처벌을 받고 타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재물을 뺏으면 강도죄로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절도범인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시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경우에는 준강도죄라 하여 강도죄로서 처벌을 받게 된다.

절도죄의 경우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나 강도죄의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벌금형이 없으므로 절도죄로 처벌받느냐 준강도죄로 처벌받느냐에 따라 그 형량의 차이가 크다.

대법원은 이 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절도범이 준강도범이 되기 위한 폭행 또는 협박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실행중이거나 그 실행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단계에서 행하여짐을 요하므로 절도범행 10분후 피해자의 집에서 200m 떨어진 곳에서 붙잡혀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는 준강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귀하의 아들의 경우 절도범행후 학교에 가서 1시간 수업을 받고 다시 피해자가 가게에 돌아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중 폭행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이 경우는 절도죄의 범행은 이미 완료된 것이고 따라서 준강도죄가 아닌 단순절도죄 또는 단순절도 및 폭행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받게 되므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